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숙애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1월 12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5일

## 3. 제안사유

-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는 매우 중요하나 장애유형별, 개개인별로 의사소통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충청북도 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통합·관리를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,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함(안 제3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)
-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### 가. 제출배경

-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‘제5차 장애인종합계획(2018-2022)’에 따르면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뇌병변장애인,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」에 따라 “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”에서 구어를 통한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, 발달장애인, 뇌병변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센터는 없음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」에 따라 “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”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음
- 그러나 기립훈련기,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등 신체 보조기기 위주로 대여 및 보급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인 감각 보조기기,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은 보급 부족과 대여불가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임
- 충청북도장애인단체협의회(21. 7월 출범)에서는 25개 요구안을 발표하며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의 부족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였음
- 본 조례안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,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·운영 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 내용

### ○ 안 제2조(정의)

- “의사소통”의 정의를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·심리적으로 교류로 규정하였고,
- “보완대체의사소통”은 개인특성에 따라 보완·대체할 수 있는 상징체계와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규정하였음

### ○ 안 제3조(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)

- 장애인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가짐을 명시함

### ○ 안 제4조(책무), 안 제5조(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·시행)

- 안 제4조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 조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, 기술·행정·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5조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

### ○ 안 제6조(홍보 및 교육)

- 안 제6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
### ○ 안 제7조(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·운영)

-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\*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

\* 현재 서울특별시(2020. 9월 개소)에서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·운영 중임

- 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## 다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  - 상위 법령인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장애인 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함
-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의사소통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이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의사소통 수단 개발, 의사소통 지원 강화와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
- 현재 충북의 청각장애를 포함해 모든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관은 수어통역센터가 유일하며 의사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가 필요함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시설들과의 교육, 지원 등 운영 내용의 중복성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